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산림비전센터 유튜브 생중계
국제회의장(10층) (동물권행동 카라)

가축전염병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국회 토론회

주최



송옥주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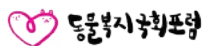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산림비전센터 유튜브 생중계
국제회의장(10층) (동물권행동 카라)

가축전염병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국회 토론회

주최



송옥주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주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13:40~14:00 (20분)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4:00~14:10 (10분)	개회 및 인사 말씀
14:10~14:15 (5분)	기념 촬영
14:15~14:40 (25분)	[발제1] 살처분 문제와 가축방역 정책 과제 이근행 소장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4:40~15:05(25분)	[발제2]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제안의 배경 및 과제 서국화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15:05~15:15(10분)	휴식
15:15~16:15 (60분)	토론 <hr/> <p>좌장 : 이항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토론 : 김인순 도의원 경기도의회 박경일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박은경 대표 두레생협 경기지역협의회 이홍재 회장 대한양계협회 조현정 활동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최창호 부대표 한 살림 유정란 작목모임 하승수 대표 공익법률센터 농본</p>
16:15~16:25 (10분)	자유 토론 / 질의응답
16:25~16:30(5분)	마무리 / 폐회

목차

인사말	5
<hr/>	
[발제 1] 살처분 문제와 가축방역 정책 과제 이근행 소장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1
[발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제안의 배경 및 과제 서국화 변호사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27
<hr/>	
[토론 1] 가축전염병 예방체계의 문제와 경기도의 대응 김인순 도의원 경기도의회	41
[토론 2] 박경일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45
[토론 3]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박은경 대표 두레생협 경기지역협의회	47
[토론 4] 정부의 고병원성AI 방역대책 개선사항 이홍재 회장 대한양계협회	49
[토론 5] 농장동물 생명권 존중하는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으로 전환 필요 조현정 활동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53
[토론 6]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해 최창호 부대표 한살림 유정란 작목모임	55
[토론문] 하승수 변호사, 대표 공익법률센터 농본	57
<hr/>	
[별첨자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61

인사말

동물복지국회포럼(박홍근 의원)

송옥주 의원

위성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대응 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왔고 전국 곳곳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겨울 살처분의 악몽을 또 반복하게 될까 축산업계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되지 않은 경우의 살처분 판단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명령을 취소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감염 위험이 소멸한 경우에도 전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비감염 가축에 대한 무자비한 살처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발병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면적량이 이전에 비해 줄기는 했지만, 이러한 법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차별적 살처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4월 공동주최했던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이어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등과 함께 비감염 살처분을 따로 규정하고 살처분 유예 요건과 명령 철회조항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해 12월 6일 발의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이름에 무색하게 가축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보고 그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던 ‘가축의 건강 유지’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거치며 문제의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염병에 걸렸다고 해서 걸린 사람은 물론, 걸리지 않은 사람들까지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대상이 농장동물 일지라도 전염병 예방은 죽이는 방식에서 살리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법안을 토대로 가축전염병 대응 방안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법안 발의와 토론회 주최를 함께해주신 송옥주 의원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간사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지금의 생명을 죽이는 법에서 생명을 살리는 법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갑) 출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송옥주입니다.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가축전염병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님 주관을 맡아 주신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서 이곳까지 찾아주시고 유튜브로 함께 하고 계신 동물 애호가 및 관련 종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2월 19일, 저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화성의 산안마을에서는 철저한 방역 관리와 연이은 조류독감 음성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키운 산란계 3만 7천 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산안마을 주민분들과 저를 포함한 화성시의 많은 분들이 살처분 조치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검출된 농가의 반경 3km 내에 내려지는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살처분 및 유예 여부 등의 판단기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처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산안마을과 같은 불필요한 살처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하고자 저는 지난 4월 15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집행을 보다 신중하게 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음성이 나온 경우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축산, 동물보호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기존의 가축전염병 대응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여 가축방역 정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불필요한 살처분을 막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축전염병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모두가 안심하는 가축방역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가축전염병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국회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제안해주신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등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송옥주 의원님과 동물복지 국회포럼, 그리고 모든 민관학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가축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도 합니다. 작게는 먹거리, 크게는 한 국가의 존립과도 밀접하게 맞닿아있어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내 가축방역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강력하고 선제적인 방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구제역 면역 강화제를 개발해 백신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고 돼지 열병 확산 방지라는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지난해 국무총리 최우수상을 수여하는 등 K-가축방역의 주무부처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明)에는 항상 암(暗)이 존재하듯 국내 가축방역 정책에도 아직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토론회의 개최가 참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 기탄없이 나눠주신 고견을 통해 이 공론의 장이 국내 가축방역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걸음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가축전염병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국회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1

살처분 문제와 가축방역 정책 과제

**이근행 소장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살처분 문제와 가축방역 정책 과제1)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

2021년 12월 15일 /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2016~17년 겨울 이후 4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감염이 크게 번지고, 이에 대응하여 강화된 가축방역 행정이 이루어짐
 - 2018년말 개정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발생농장과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및 보호지역(반경 500m~3km)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살처분함
- 강화한 ‘살처분’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했다고 방역행정은 평가하고 있으나,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과 수급 기반을 약화시키고 달걀값 상승과 1천억 세금을 수입에 낭비함. 또한 가금사육농가들의 방역실천을 오히려 저해함
- 정책 실패와 여론에 따라, 여름 들어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과 10월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제정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하고, 겨울들어 11월 8일 첫 발생이후 살처분 적용범위를 발생농장 500m내 전축종(오리 ~1km)으로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살처분을 유일한 방역수단으로 삼고, 관행적 행정에 머물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이에 HPAI 관련 현황과 문제, ‘살처분’에서 ‘예방’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급한 계기로서 ‘비감염 살처분’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하도록 하고, 백신 (시범)도입, 사육 환경의 개선과 입지 조정 등 단·중기 정책 과제를 제안함

1. HPAI 발생 현황

-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20.10.1~‘21.4.9) (HPAI 발생현황 정보공개)
 - 가금농장 107건 지역(발생일자/축종) *발생일자는 시료채취일 기준

정읍(11.26/육용오리), 상주(12.1/산란계), 영암(12.4/육용오리), 여주(12.6/산란계), 음성(12.7/메추리), 나주(12.7/육용오리), 여주(12.8/메추리), 나주(12.9/육용오리), 장성(12.10/종오리), 정읍(12.10/육용오리), 영암(12.11/육용오리) 2건, 김포(12.12/산란계), 임실(12.14/육용종계), 구미(12.14/육계), 화성(12.16/산란계), 고창(12.16/육용오리), 여주(12.21/산란계), 용인(12.20/종오리), 음성(12.22/종오리), 화

- 1) 시민사회가 주관한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토론회(2021.4.19.)」, 양계협회가 주관한 「고병원성AI 백신접종정책 도입을 위한 토론회(2021.7.9.)」 등 발제 자료를 보완함

성(12.22/산란계), 남원(12.22/육용오리), 남원(12.23/육용오리), 구례(12.23/육용오리), 천안(12.24/종오리), 예산(12.25/육용종계), 경주(12.25/산란계), 구례(12.23/육용오리), 정읍(12.27/육용오리), 여주(12.28/산란계), 평택(12.28/산란계), 익산(12.28/종오리), 논산(12.29/육계), 곡성(12.29/육용오리), 김포(12.29/산란계), 고창(12.30/육용오리), 김포(12.31/산란계), 경주(12.31/메추리), 부안(12.30/육용오리), 무안(1.1/산란계), 천안(1.3/산란계), 천안(12.28/육용오리), 세종(1.4/산란계), 부안(1.4/종오리), 음성(1.5/종오리), 영암(1.6/육용오리), 김포(1.8/산란계), 진주(1.8/육용오리), 거창(1.9/육용오리), 남양주(1.11/산란계), 고성(1.11/육용오리), 무안(1.7/육용오리), 안성(1.12/산란계), 문경(1.11/산란계), 정읍(1.12/종오리), 포천(1.12/산란계), 천안(1.12/산란계), 흥성(1.13/육용종계), 음성(1.12/산란계), 안성(1.13/산란계), 하동(1.14/육용오리), 보성(1.15/종오리), 김제(1.15/육용오리), 김제(1.16/육용오리), 용인(1.18/산란계), 음성(1.18/산란계), 이천(1.21/산란계), 천안(1.22/산란계), 무안(1.22/산란계), 화성(1.23/산란계), 함평(1.24/육용오리), 포천(1.26/산란계), 파주(1.26/산란계), 이천(1.26/육용종계), 안성(1.26/육용종계), 안성(1.27/산란계), 고창(1.27/육용오리), 안성(1.28/산란계), 이천(1.29/산란계), 포항(1.30/산란계), 안성(1.31/산란계), 이천(2.1/산란계), 충주(2.2/종오리), 영암(2.4/종오리), 괴산(2.5/종오리), 포천(2.7/산란계), 음성(2.9/종오리), 부안(2.9/육용오리), 평택(2.9/산란계), 나주(2.11/종오리), 제주(2.12/육용오리), 이천(2.13/산란계), 평택(2.15/산란계), 영주(2.15/종오리), 괴산(2.17/종오리), 화성(2.17/산란계), 통영(2.18/혼합사육), 이천(2.22/산란종계), 원주(2.23/산란계), 포천(2.26/산란계), 나주(3.10/산란계), 충주(3.10/토종닭), 충주(3.11/산란계), 장흥(3.21/육용오리), 나주(3.23/육용오리), 장흥(4.6/육용오리)

- 관상용 2건 : 천안(12.14/체험농원), 고양(12.28/관상조)
- 2월 19건, 3월 5건, 4월 1건 발생
- 3월, 4월 이후 광역별 방역대 해제

○ 2021년 겨울 ('21.11.~'21.12.10 현재)

- 첫 발생: '21.11.8.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11.10. 확진)
 - *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21.11.11.)
- 전년('20.11.26.) 대비 첫 발생 18일 빠름

농장명(농장주)	농장소재지	발생일자	축종(품종)	발생두수(마리)
옥주농장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2-05	닭-산란계	-
청운농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12-04	닭-산란계	-
개나리농장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11-21	닭-백세미	-
양수농장2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11-17	오리-기타	-
양명자연농장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영관리	11-16	오리-비분류	-
일승오리농장(**)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11-14	오리-육용오리	-
한빛농장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11-11	오리-육용오리	-
한빛농장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11-11	오리-육용오리	-
매봉농장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11-09	오리-기타	-
매봉농장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11-09	오리-기타	-

-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 정보공개 방식 변경

○ 고병원성 AI 연도별 발생 및 피해 현황

구분	'03/'04년	'06/'07년	'08년	'10/'11년	'14/'15년	'16/'17년	'17/'18년
시기	'03.12.10 ~'04.3.20 (102일간)	'06.11.22 ~'07.3.6 (104일간)	'08.4.1 ~'08.5.12 (42일간)	'10.12.29 ~'11.5.16 (139일간)	①'14.1.16~7.29 (195일) ②'14.9.24~'15.6.10 (260일) ③'15.9.14~11.15 (62일)	①'16.3.23~4.5 (13일) ②'16.11.16~'17.4.4 (140일) ③'17.6.2~6.19 (17일)	'17.11.17.~'18.3.17 (121일)
지역 및 건수	19건 양성 (7시·도 10시·군)	13건 양성 (3시·도 5시·군)	98건 양성 (11시·도 19시·군)	91건 양성 (6시·도 25시·군)	① 212건 양성 (11시·도 41시·군) ② 162건 양성 (9시·도 34시·군) ③ 17건 양성 (2시·도 6시·군구) ※ 전체 391건 양성	① 2건 양성 (1시·도 2시·군·구) ② 383건 양성 (10개시·도, 50개 시·군) ③ 36건 양성 (7개시·도, 14개 시·군구) ※ 전체 421건 양성	22건 양성 (5시·도 15시·군)
방역 조치 (살처 분)	•392호 528만 5천 수 •'04.9.21 청정국 선언 (6개월 후)	•460호 280만 수 •'07.6.18 청정국 선언 (3개월 후)	•1,500호 1,020만 4천 수 •'08.8.15 청정국 선언 (3개월 후)	•286호 647만 3천 수 •'11.9.5 청정국 선언 (3개월 후)	① 548호 1,936만 1천 수 ② 234호, 511만 수 ③ 27호, 30만1천 수 ※ 전체 809호 2,477만 2천 수 •'16.2.28 청정국 선언 (3개월 후)	① 2호, 1만 2천 수 •'16.8.18 청정국 선언 (3개월 후) ② 946호, 3,787만 수 ③ 185호, 194천 수 ※ 전체 1133호 3807만 6천 수 •'17.10.13 청정국 선언 (3개월 후)	•140호 653만 9천 수 •'18.7.12 청정국 선언 (4개월 후)
형질형	H5N1형	H5N1형	H5N1형	H5N1형	H5N8형	① H5N8형 ② H5N6(343건) 및 H5N8(40건)형 ③ H5N8형	H5N6형
축종별 (건수)	닭 10, 오리 9	닭 5, 오리 6, 메추리 1, 기타 1	닭 79, 오리 18, 기타 1	닭 34, 오리 54, 꿩 1, 메추리 2	① 닭44, 오리159, 기타9 ② 닭40, 오리116, 기타7 ③ 오리 13, 기타 4	① 오리 1, 기타 1 ② 닭215, 오리159, 기타9 ③ 닭22, 오리1, 기타13	닭8, 오리14
재 정 소요액	874억 원	339억 원	1,817억 원	807억 원 살처분보상 금(670억 원) 생계소득안 정(39억 원) 입식용자 수매 등(98억 원)	3,364억 원 살처분보상금 1,772 (국비 1,417) (1차 1,272 2차 470, 3차 30) 생계소득안정 112 (국비 78) (1차 67, 2차 37, 3차 8) 입식용자, 수매 등 916 (*'14: 870, '15: 46) 소독 등 564	3,621억 원 ① 5억원 살처분보상금 5(국비 4) ② 3,597억원 살처분보상금 2,720 (국비 2,176) 생계소득안정 193 (국비 135) 입식용자수매 488 소독 등 196 ③ 19억 원 살처분보상금 19 (국비 15)	906억 원(추정) 살처분보상금 689 (국비 551) 생계안정 3(국비 1) 입식용자 54 소독 등 13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내부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016-2017년 및 2017-2018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응사례 분석 연구(요약)」 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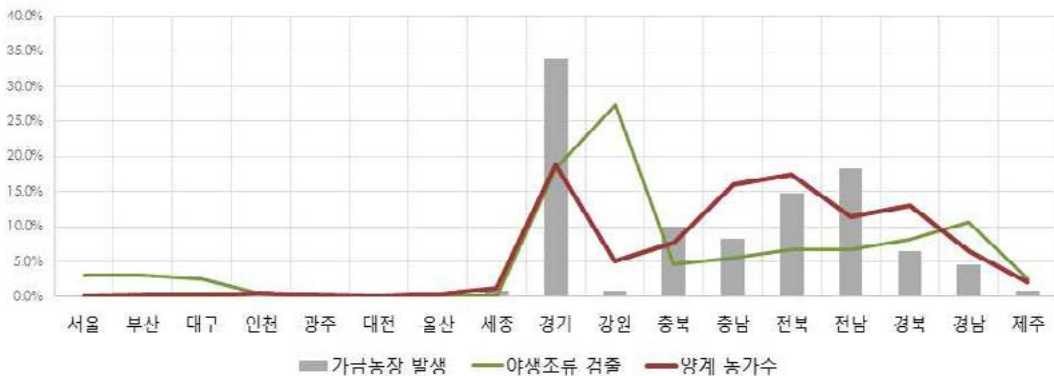
2. HPAI 발생과 대응 방향 검토

- AI는 오리, 기러기 등 야생조류로부터 감염되어 가금농장에 발생하며, 겨울 철새가 도래하여 북상하기까지 주로 발생함
 - 고병원성 바이러스는 전염성, 폐사율 높음
 - 서해 갯벌과 물길, 들판은 철새가 경유하는 천혜의 자연환경
 - 인간에게 넘어온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와 농장 가축에 넘어온 야생조류의 인플루엔자는 모두 인류가 야생 세계를 지나치게 침범했기 때문. AI 확산은 철새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가축 사육 확산 때문임을 인식해야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음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과 AI 확산
 - 지역별 HPAI 발생 관련 검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야생조류 검출수	7	7	6	1	0	0	0	0	43	64	11	13	16	16	19	25	6	234
가금농장 발생수	0	0	0	1	0	0	0	1	37	1	11	9	16	20	7	5	1	109
양계 농가수	0	2	2	13	3	0	7	29	475	128	195	402	438	290	328	163	52	2,527
야생조류 검출비(%)	3.0	3.0	2.6	0.4	0.0	0.0	0.0	0.0	18.4	27.4	4.7	5.6	6.8	6.8	8.1	10.7	2.6	100.0
가금농장 발생비(%)	0.0	0.0	0.0	0.9	0.0	0.0	0.0	0.9	33.9	0.9	10.1	8.3	14.7	18.3	6.4	4.6	0.9	100.0
양계농가수 비(%)	0.0	0.1	0.1	0.5	0.1	0.0	0.3	1.1	18.8	5.1	7.7	15.9	17.3	11.5	13.0	6.5	2.1	100.0

- * 야생조류 검출수, 가금농장 발생수는 '방역 추진상황 일보' 자료
(야생조류 검출은 최초 10.21 충남, 최종 3.30 강원 / 폐사체 181건(77%), 분변 34건(15%), 포획 개체 19건(8%))
- ** 양계농가수는 전국 산란계·육계 농가(2020년 3/4분기) 통계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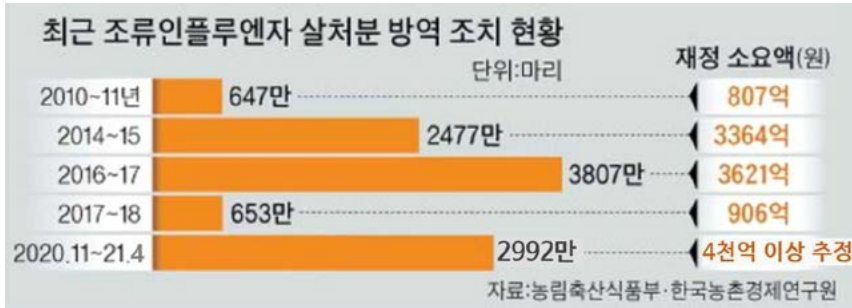
지역별 HPAI 발생 상관성 추정



- 야생조류 발생은 생체, 사체, 분변 예찰을 통해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
- 야생조류 검출은 모니터 활동으로 추세를 파악하여 대비하기 위한 것. 전수·정례 조사가 아니기에 검출건수가 곧 AI 심각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건수와 확진자 수를 생각해 보면)
- 경기도의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의 AI 발생현황을 보면, 야생철새 분뇨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30일 내에 농장 가금류에서 AI가 발생함 / 야생조류 43건 ('20.10.24.~'21.3.12.), 가금농장 37건 ('20.12.6.~'21.2.26.) (경기도, 2021.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및 대응」 문건)
- 경기도는 서해 철새도래지에 맞닿아 있고 가금농장 밀도가 가장 높음
- 반면, 강원도는 야생조류 검출은 많으나 가금농장이 적어 AI 발생건수는 낮음
- 가금농장 AI 확산은 가금류 축산 입지와 사육환경에 따른 재해임을 알 수 있음
- 2014~15년 조류인플루엔자(H5N8) 대유행 사태이후, 국제 공동연구('조류인플루엔자 H5N8의 세계적 확산과 야생철새의 역할')에서도 AI 전파 경로 차단은 한계가 있으며, 동물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 'AI 방역 제도개선 지원 TF'(2017)의 일본 방문 보고에서도 사육밀도와 사육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대통령의 '바이러스 변종 토착화가 의심되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기존의 관성적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2017.6.8.),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사육환경 개선 지적 등으로 제도, 지침을 개선하였음에도 축산 여건과 환경의 개선 노력은 소홀하며, 권위적 '살 처분' 명령 수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야생조류를 쫓아내고 감염조류를 차단하는 대응처방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가금농장 가축과 사육환경을 건강하게 전환하고(동물복지농장 등), 육용 가금의 계절제 사육(오리휴지기제 등), 가금농장 입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기적으로 입지 조정(철새도래 인근지역 불허, 감염방지 이격거리 확보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적 이해관계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축산 그린뉴딜 전환 수준의 논의를 시작해야함

3. 무분별, 과잉 살처분과 후유증

○ 2010년 이래 살처분 현황



* 중앙선데이, 2021.01.16. 그래프, 자료 보완하여 재작성

○ 살처분 농가 현황 ('20.10.1~'21.4.4. 24:00 기준) (방역 추진상황 일보(4.5))

(두수단위: 천수)

육용오리		종오리		산란계		육계		종계		토종닭		기타	
호	두수	호	두수	호	두수	호	두수	호	두수	호	두수	호	두수
96	1,849	23	184	184	16,745	98	6,984	39	1,337	30	857	17	1,937

- 지난 겨울 총 2,992만 마리의 닭과 오리 살처분 (4월 6일 발생 육용오리 포함)
- 산란계의 경우, 전국 산란계 7,385만 마리(2020년 3분기 기준)의 22.7%를 12월 이후 4개월 동안 살처분함 (9월 국감자료에서는 24%의 산란계 1,700만수 살처분)
- 올 겨울 107건의 가금농장 발생 가운데 산란계 농장 발생은 46건. 살처분한 산란계 농장은 184건. 138개 농장은 감염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살처분 조치됨
- 감염된 농장의 4배에 이르는 산란계 농장 닭을 살처분함. 감염 농장의 3배에 이르는 농장의 닭들이 예방적 살처분됨. 단순 평균해보면 1,256만 마리의 건강한 산란계가 살처분됨
- 감염 살처분 종계농장 6곳(육용종계 5, 산란종계 1), 예방적 살처분된 종계농장은 5.5배인 33곳 → 무분별하고 과도한 살처분으로 이후 양계 회생에 악영향 끼침
- 발표 자료로는 지역별, 감염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 종계별 구분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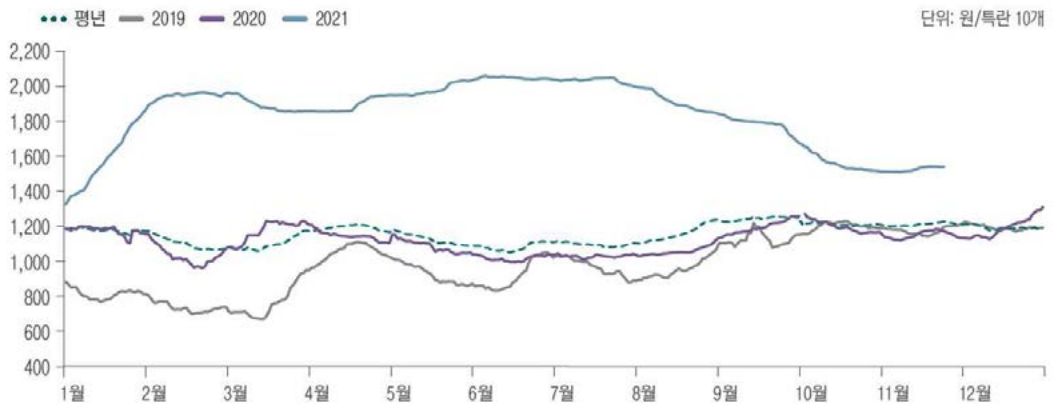
○ 경기도의 경우,

- '16/17년에 비해 AI 발생이 현격히 줄었으나, 살처분수는 차이 없음
- 발생/살처분 : ('16/17) 123건/15,885천수 → ('20/21) 37건/14,724천수
-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일률적인 살처분으로 경기도 가금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보고 (전체 살처분 중 예방적살처분 비율 61%)
- 이렇게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예방적 살처분을 실행한 사례가 있을까

○ 과잉 살처분으로 가금산업 기반 약화 및 달걀 수입에 세금 낭비

- 예방적 살처분 산란계농가 절반가량은 상반기에 입식 못함. 종계 살처분으로 병아리(중추) 가격이 AI 발생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오름
- 달걀 소비자가격은 50% 이상 폭등, 6월 말 특란 1판(30개) 7,500원대
- 기획재정부 달걀 무관세 수입 조치 시행, 효과 미미. 6월 말까지 약 1억8,800만개 달걀 수입. 항공료 등 제반비용 포함 달걀 1개당 약 228원 비용 부담. 연말까지 수입될 물량을 고려하면 달걀 수입에 들어가는 세금은 1,7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양계협회)
- 미국, 태국, 중국, 스페인 등지에서 달걀 및 난액 등 수입에 1,000억원 이상 세금 낭비(무역통계 및 국감자료)

◆ 계란 산지가격 동향



주: 농협중앙회의 가격 조사 중단으로 2019~21년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5일 이동평균가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산란계)’ 2021년 12월

- 농의 본질적 과제인 농업·농촌의 건강한 지속, 자급률 제고와 식량주권 확보는 밀쳐놓더라도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목적인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살처분’ 방역인가에 대한 평가 필요. 국내총생산 계정과 농식품 수급 이윤의 증가만으로 농정의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 과잉 살처분으로 인한 행정적, 경제적(예산과다지출, 축산업위축), 환경적(토양, 지하수오염), 인권(트라우마 자살까지), 동물권 등 문제

4. 가축방역 정책과 행정의 문제

“산불이 났습니다. 위험을 막고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진화에 나섭니다. 헬기를 동원해도 끌 수 없을 만큼 불이 번집니다. 주변 산림을 미리 태워 불길을 막기 위해 맞불을 놓기로 합니다. 마지막 수단인 만큼 맞불은 제대로 살피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산에 모두 맞불을 놓아 발화 산보다 훨씬 넓은 주변 산을 모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산불을 막았다 합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 상황 진단과 의사결정의 독단성

- 중수본 조정 방역대책 발표(2/15) : 2주간 살처분 대상 조정



- 야생조류 HPAI 발생 건수가 '16/'17년 59건에서 올 겨울 184건으로 212% 늘어나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방역행정을 잘해서 가금농장의 AI 발생이 72%나 줄었다는 진단과 평가를 내리고, 3km 확대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근거 설명없이 1 km로 조정한다는 발표 (설연휴 다음날, 국회 농해수위 장관출석 전날)
-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려면 기간, 장소, 예찰건수와 확진수를 밝혀 비교해야
- 2016년~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분석보고서(2017.12. 농식품부)에서는 19쪽에 야생조류 검출현황이 총 65건 검출(H5N6형 52건, H5N8형 13건)로 보고되고, 이 조사보고를 분석정리한 백서(2016-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응사례 분석 연구(2020.2. 농식품부)에는 88쪽에 2016년 상시예찰로 야생조류의 경우 64개소에서 항원 77건, 37개소에서 항체 89건이 양성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옴. 59건은 어디서 온 수치인지?
- 작년 12월8일 농식품부 보도자료(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서도 이미 '야생조류 예찰(분변 검사)을 1개월 앞당겨 9월부터 실시중이며, 예찰 물량도 약 8% 확대하였다.(23,406건→25,216)'고 밝힘. 감염병은 검사가 늘면 확진 가능성도 늘어남
- '수치 보고 심각해서 주변 모두 살처분했더니 방역효과 있더라'
- 가축방역은 가축을 건강하게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건강한 가축을 과잉 살처분하여 방역행정 성과실적을 쌓으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 방역 정책 방향과 기준, 집행의 비합리성

- ‘살처분’은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로 최종적 수단임
- 살처분 강화는 방역행정의 과잉. 2016~17년 HPAI 대유행 사태이후 방역 강화방침에 따라 ‘예방’조치 최종 방역수단인 ‘살처분’으로 일관하는 ‘예방적 살처분’ 강화. 법제도에도 감염 가축의 살처분은 방역조치로 인정되나(필요적 살처분, 기속행위), 예방적 조치로서 살처분은 단서조항으로 ‘질병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선제적 조치이며 방역 재량행위일뿐 ‘예방’으로 취해야할 조치는 아님에도 ‘예방적 살처분’으로 HPAI 발생 이후 1억 마리 이상 살처분
- 고시 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예방적 살처분’ 강화 조항을 담아 살처분을 ‘예방조치’로 시행 강화. 야생조류 모니터조사와 네덜란드 등 외국사례를 들어 보호지역(500m~3km)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는 것은 종합적 판단 근거 미약
- 외국의 경우, 살처분은 발생농장에 한하며, 예방적 살처분은 역학 정보에 따르며, 네덜란드의 경우 통제, 고립이 가능한 지역단위로 권역구분하여 발생여부에 따라 구분 방역
- 우리나라도 야생조류와 가금사육 입지, 환경 등 역학정보에 따른 방역대 조정필요
- 2주간 살처분 대상 조정 방역대책 발표(2/15) : 야생조류 HPAI 발생 건수가 ‘16/’17년 59건에서 올 겨울 184건으로 212% 늘어나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방역행정을 잘해서 가금농장의 AI 발생이 72%나 줄었다는 진단과 평가를 내리고, 3km 확대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근거 설명없이 1km로 조정. 상황 변화 조치인데 소급 적용 안함
- 원칙에서 지침까지, 의사결정에서 집행까지 소통과 견제, 개방과 책임, 민주적 과정이 보이도록 방역행정 개혁 필요

○ 가축방역 행정 집행의 현장성, 민주성 미흡

- 2021년 살처분 방역 현장에서 바라본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책임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권위주의적 권한행사, 독단적 관료행태의 문제로 보여짐
- (예방적) 살처분 조치의 형식적 결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거나, 실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지자체에 하달되는 구조와 관행 여전
- 화성 산안마을 사례, 2018년 800m 인근 감염시에도 피해없이 지나고, 선진 방역 체계를 갖추고, 매일 검사가 이루어지고, 정밀검사도 음성, 잠복기도 이미 지났고, 화성시와 경기도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 재검토 의사에도 농식품부는 살처분 명령을 여전히 고수 / 농식품부 - 경기도 - 화성시 역할과 정책결정, 행정집행 모습
- 행정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예외없는 살처분’을 고집하고 있으나, 천안

- 농장의 살처분 범위 조정, 용인 종계농장의 지방심의회 건의에 대한 형식적 대응 등 행정집행 과정의 과두화, 과잉대응 양상은 행정이 책무의 형평성을 잃음
-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조정, 기간유예, 현지실사단 운영 책임과 권한에서 현장과 정책결정 사이에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가?
 - 경기도에서 법적기구인 지방방역심의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5건의 살처분 제외 의견을 중앙방역심의회에 건의했으나, 농식품부는 살처분 지시
 - 이원택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송옥주의원실의 법률개정안(예방적살처분 명시)에 대한 농식품부의 '개정반대' 의견에는 한결같이 '현재 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근거로 하여 구제역·AI 등 가축 질병별 규정(고시)에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운영 중에 있어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세부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을 말하지만 일률적 살처분 조치 외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민간의 민원, 청원에 대해서는 기준만 언급하고 단서 조항에 대한 안내도 없이 살처분할 수 밖에 없음을 답변하고 있음
 - 농가-지방정부(화성시·경기도)-중앙정부의 행정 권한과 책무의 적정 배분과 유기적 관계, 소통과 지도·지원이 적절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필요
- 사후적으로 국감이후, 살처분과 수급문제에 대한 보도에 설명자료를 내어 살처분 범위 설정 설명. 사후 근거 마련한 듯함(9/28일 농식품부 설명자료)

<참고> 살처분 범위 결정시 고려사항

□ **3km** 예방적 살처분 결정시 고려사항('18.9)

- ① (과거사례) '16/17년에는 AI 발생농장 반경 500m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농장 여건·역학특성 등에 따라 범위를 확대
 - 조기 확산 차단에 실패해 총 419건 발생 등 사회·경제적 큰 피해 초래
 - '16년 11월~12월의 경우, ▲55%가 발생농장 반경 3km 내(310건 중 170건), ▲그 중 91%가 7일 이내에 발생(170건 중 155건)
- ② (철새 행동반경) 국내 철새도래지 서식 야생오리류에 GPS를 부착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3km 반경의 활동 양상(17, 한국환경생태연구원)
- ③ (해외사례) '20/'21년 프랑스에서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집중 발생지역(남부)의 오리 및 방사 사육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3km에서 5km로 확대

□ **1km** 예방적 살처분 결정(2.15~)시 고려사항

- 야생조류 고병원성 검출 : 일 평균 (1월) 3.5건 → (21~212) 2.75건
- 가금농장 고병원성 발생 : 일 평균 (1월) 1.40건 → (21~212) 0.83건
- 2월 중순부터 야생조류 복상, 알 생산 가금농장(1,305호) 일제검사 완료(2.8~2.10), 2호 조기발견

5. 가축방역 정책 전환 과제

○ 변화 시도와 방향 상실,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

- 가축전염병 예방 정책과 행정과정은 ①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②정책의 목표에 다가가는가, ③생산현장과 소통하며 어떻게 지원·지도하는가 라는 기준에서 평가, 성찰해야함
- 7월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과 10월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제정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하였으나, 여론의 지적에 대응하는 관행적 수준에 머물
- 방역실시 요령 개정 이유의 첫번째로, ‘가.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체계 구축(제19조제1항, 별표 10) -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추진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위험도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 체계 구축’을 들며 여전히 살처분 범위는 그대로 둔채, 19조 2항을 “2.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개·고양이 제외, 관리지역 내 돼지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로서 별표 10의 절차에 따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정한 것. 다만,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살처분 제외 대상으로 방역분류기준을 부여받은 농장 중 살처분의 제외가 결정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 다만, 이하는 ??
- ‘[별표 10]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살처분 범위 결정 절차(제19조제1항 관련)’을 추가해 1. 항목에 ‘1.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서의 살처분 및 폐기 범위는 관리지역 내 전체 적용대상 동물 및 보호지역 내 발생농장과 동일한 축종의 적용대상 동물을 원칙으로 하되, 제2호의 절차에 따라 매년 9월 30일 까지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는 내용을 넣고 과학적 체계적 방역이라 하고 있음. 이제까지의 관행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 질병관리등급제와 고시제정의 경우, 논의하고 있는 업종신설 등의 경우도 관료행정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생산현장에 부담을 지우는 생산주의 농정에 매진하려는 듯함. 지속가능한 농정으로의 방향 전환 절실함

○ 살처분 방역에서 감염병 ‘예방’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아니라 소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사후 방역으로 살처분에 매달리는 정책은 악순환에 스스로 빠지는 길. 살처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명확히 하고, 예방 정책으로 전환해야함
- 정책수단으로 검토되고, 제도로 제시되어 있어도, 당장의 행정성과에 치우쳐 행정편의적으로 선택 활용되어온 정책 수단들을 전면 검토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할 때임

- 가축전염병 예방의 목적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축산을 지속하는 것. 정책의 방향과 수단은 방역(감염된 바이러스 격리와 제거), 예방(효과성있는 백신 시범사업과 같은 면역 형성지원이나 거리두기와 같이 사전에 감염 확률을 낮추고 확산을 방지), 건강한 축산의 지속(가축사육 환경관리)이 모두 포함되나,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 노력은 등한히되고 있으며, 최후의 수단이어야할 죽임(살처분 방역)에 기대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모순
- 과도하고 과잉 강화된 방역행정이 ‘가축전염병 예방’ 정책의 합리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예방을 제1원칙으로 삼아 현 방역행정의 ‘예방적 살처분’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의 목표가 없음. 농지와 마찬가지로 축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가 없음.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이나 ‘동물복지 종합계획’ 등 연계 정책에도 정책목표는 명확하지 않고 가축방역 관련 사항도 거의 없음
- 산란계의 경우 동물복지농장 농장수는 전체 농장의 15%, 사육두수로는 3.2% 수준임(통계청 2019 4/4분기 가축동향조사)
-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목적을 축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가축의 건강을 ‘증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 예방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무분별한 살처분 방역을 통제하고 예방조치로 취하고 있는 ‘비감염 살처분’을 법률 수준에서 엄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안

○ 백신 (시범)도입

- HPAI 백신은 효용성, 위해성, 종축한계 등 여러문제가 있음에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특정지역 산란계에 시범도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하지만 이 역시 제도가 있음에도 ‘방역실시요령’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문구까지 넣으면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음. 2017년 ‘AI 백신대응 TF팀’의 논의 결과가 이것인지? 청정국 지위라는 성과주의 행정에 갇혀있음
- 예방의 수단으로 활용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지역별, 축종별(산란계와 종계 우선) 시범사업 등 추진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가축방역 정책과 행정 선진화 과제

- K방역의 특징은 관련 분야의 행정과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통합적·개방적·민주적 소통체계와 참여로 이루어냄. 인간 생명과 사회전체를 뒤바꿀 정도의 중요성과 긴박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동안 상황과 조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새로운 시도 등을 통해 성과를 이룸
- 반면, 가축방역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생명

- 과 사회의 근간인 농식품 관련 문제임에도 과거의 행정중심 결정과 권위를 앞세운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행정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산업화와 생산주의 성장의 일관성 쌍생아임. 위기 상황이 가축전염병, 가축생명 팬데믹의 사회적 의제화와 가축방역의 전환 기회임
 - 가축방역 정책은 축산(구조, 규모, 방식)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 생명산업의 고리임.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생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과제(그린뉴딜 등), 행정과 산업의 변화 필요가 쌓여왔으므로 축산정책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
 - 축산 구조·환경 개선, 축산업 허가시 가축전염병 고려, 살처분의 필요 최소화, 보상 문제의 합리적 방향, 지자체 방역협의체계와 방역행정 거버넌스 체계 실체화 등 전환 필요
 - 건강한 축산이 농업의 온전한 한 축으로 국가적 중요성이 있음을 해당 부처, 관심 주체들이 나서서 사회 의제화하고, 국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며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

발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제안의 배경 및 과제

**서국화 변호사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제안의 배경 및 과제

2021. 12. 15.

서국화(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대표)

(현행) 예방적 살처분의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9조(살처분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살처분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관계관, 시·군 관계관 등과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돼지·개·고양이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
2.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개·고양이 제외, 관리지역 내 돼지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로서 별표 10의 절차에 따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정한 것. 다만,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살처분 제외 대상으로 방역분류기준을 부여받은 농장 중 살처분의 제외가 결정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
4. 그 밖에 발생농장과 근접거리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진입로 사용, 동일한 분변처리장 이용 등 역학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살처분 제외가 결정된 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과 사람·장비·차량·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어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살처분 및 폐기 명령 대상에 포함한다)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 결정시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관계관,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 폐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축소하여 실시하거나 제외시키기로 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예방적 살처분에 관한 법령 규정 적용의 문제

참사랑 농장의 사례

- 2017. 2. 참사랑 농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농장에서 조류독감 확진
- 2017. 2. 28. 참사랑 농장 조류독감 음성판적
- 2017. 3. 10. 익산시 -> 참사랑 농장 : 보호지역 지정, 살처분 명령

2017. 3. 13. 집행정지 신청 + 살처분 명령 취소소송

2017. 3. 27. 집행정지 신청 기각->항고

2017. 5. 16. 항고인용(집행정지)

2018. 5. 31. 살처분 명령 취소소송 기각(패소) -> 항소

2019. 12. 11. 항소기각(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20. 4. 29. 상고 기각(대법원)

원고(참사랑 농장) 의 주장

- 수차례 이루어진 조류독감 검사에서 음성 판정
- 살처분 명령의 위법성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익산시작의 위험도 평가가 부존재하거나 부실
: 익산시 방역과장 등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 살처분의 불필요성
(발병시점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시까지 3년이상 경과)

판결 이유(전주지법 2017구합739 판결문 일부)

-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위험도를 감안 하더라도 살처분 명령 가능하다.
 - 최초 발병 농장으로부터 500m~3km 이내 22개 농장에서 1,328,500마리의 닭 사육
 - 분동과정에서 오염원 유입 또는 철새 분변이 노출되어 농장 출입차량, 사람 등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 최초 발병시기가 2017. 2. 20. 이전이다.
 - 철새가 목격되었고, 야생조류 분변이 목격되었다.

판결 이유(전주지법 2017구합739 판결문 일부)

- 복지농장의 경우 예방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없다
 - 목적- 정당 /
 - 수단-적합 /
 - 최소침해 원칙에 반하지 X /
 - 공익상 필요 ≥ 원고 불이익

예방적 살처분에 관한 법령 규정 적용의 문제

산안마을의 사례

- ▶ 2020. 12. 23.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
- ▶ 2020. 12. 24. 산안마을 조건부 살처분 명령
- ▶ 2020. 12. 27. 행정대집행 계고
- ▶ 2021. 1. 1. 계고(2차)
- ▶ 2021. 1. 6. 계고(3차)

- ▶ 2021. 1. 11. 행정심판청구
 같은 날 계고(4차)

- ▶ 2021. 1. 14. 집행정지신청
- ▶ 2021. 1. 25. 집행정지 인용

- ▶ 2021. 2. 19. 살처분 집행

살처분 명령의 집행정지에도 불구하고 살처분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사정

: 예찰지역 전환 X

: 달걀 반출 불가로 인한 어려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의 필요성

-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위험도 평가 규정 준수 여부
- 법률상 예방적살처분의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함
- 농식품부의 지시만을 따르는 허수아비행정

- 처분권자의 독단적 행정(살처분명령 불복에 대한 보복행정)
- 살처분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에도 살처분 명령 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처분권자의 독단(역시 보복행정)

참사랑농장 1심 판결문 (전주지법 2017구합739) 일부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 두446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농장의 산란계들이 실제 AI에 걸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최초발병 농장 주위의 사육현황, 최초발병원인, 최초발병시기,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제안

- 제1조) 축산업의 대상으로서만 가축을 바라보고 그의 생명과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추가
- 제4조) 현행법상 중앙과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이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가축방역심의회의 지위나 역할이 혼재된 상태로 서로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는 우리나라 전체의 방역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지방 가축방역심의회는 해당 구역 내의 방역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역할을 구분하고, 지방 가축방역심의회가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요건으로서의 가축방역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비감염살처분(현행 예방적 살처분)의 실질적인 결정을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하면서 중앙 가축방역심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비감염살처분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제안

- 제18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함에 사육환경을 고려하도록 함.
- 제20조 및 제20조의2 신설) 현행법은 감염살처분과 비감염살처분을 제20조 살처분명령 규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음.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살처분 여부, 유예여부 등의 판단기준을 달리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비감염살처분의 경우에도 살처분 유예 등을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비감염 가축들에 대한 살처분 필요성이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권자가 '형평성'등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살처분을 고집하면서 무고한 생명을 '죽이러'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바, '살처분명령철회'규정을 두어 위와 같이 불합리한 행정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

2021. 12. 6.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박홍근 의원 등 13인
-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포함하고,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등 가축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및 제18조).
 - 나.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함(제4조).
 - 다. 비감염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살처분 명령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감사합니다 :D

토론

김인순 도의원 | 경기도의회

박경일 사무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박은경 대표 | 두레생협 경기지역협의회

이홍재 회장 | 대한양계협회

조현정 활동가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최창호 부대표 | 한살림 유정란 작목모임

하승수 대표 | 공익법률센터 농본

토론 1

가축전염병 예방체계의 문제와 경기도의 대응

김인순 도의원 | 경기도의회

I. 가축전염병 예방체계의 문제

1.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한 공공의 인식

- 매년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병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극단적 조치와 미봉책에 의존하여 상황을 수습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발병에 따른 살처분은 축산농가 뿐만아니라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 또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축 살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업 종사자에게는 심리적 외상으로까지 이어져 계산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역시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의 섭리에 반하여 규모화만을 추구하는 가축 사육방식으로 발전해왔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한 반면, 가축들의 사육환경은 매우 열악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음은 부인할 수 없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의 주요 원인을 ‘급격한 집약화’ 즉 밀집사육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2. 가축전염병 예방과 동물복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결여

- 가축의 밀집사육은 위생적이지 못한 축산환경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가능성의 증가를 가져옴.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축 환경의 수준, 즉 위생관리 및 방역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도 이와는 상관없이 가축전염병 발생시 발생지역과 인근지역 모두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 이에 가축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고 가축질병 관리 수준 등급을 부여하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 시기적, 내용적 타당성이 높다고 보여짐.
-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준으로만 축산업을 이해하는 기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즉 동물복지 측면에서 축산업을 바라봐야 할 시기임. 동물복지 측면에서의 축산업 행태 변화는 자연스럽게 밀집된 사육을 지양하게 되며 이는 동물의 건강을 담보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가축전염병 발병시 의심의 여지도 없이 시행되는 살처분, 그리고 발병지역 반경 지역까지 시행되는 예방적 살처분을 가축전염병 예방책의 당연 순위로 보는 정부의 태도 역시 전환되어야 함. 전염병 발병에 따른 살처분은 동물의 면역력 생성을 제한하는 문제를 가져오는 바, 적어도 예방적 살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II. 가축전염병 관련 경기도의 사례와 대응

1. 경기도의 사례

- 본 의원의 지역구 내 사건이기도 한 산안농장 살처분 명령과 집행은 본 논의 주제에 적합한 사례임.
 -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산안농장은 친환경 산란계 농장으로서 1984년부터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 선정됨.
 - 산안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은 1m²당 9마리 산란계 사육 기준보다 강화된 4.4마리로 사육환경이 상당히 우수한 축산업계의 모범적 사례라 볼 수 있음.
- 산안농장은 지난해 12월 인근 3km 내 강제살처분 규정으로 인하여 살처분을 받았고, 올해 4월 입식한 병아리를 사육하여 올 9월에야 계란을 출하하였음.
- 가축전염병 발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는 살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한 반경거리 등의 조정이 가능함. 그러나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후 최종결정권을 농림축산부장관이 가지고 있음. 정부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경거리 조정은 불가능함.

2.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의 한계에서 경기도의 대응

- 가축전염병 예방에 따른 정부 정책의 비합리성을 개선하고자 본 의원은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8월 시행되었음.
 - 본 조례의 기본 취지는 동물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를 통해 축산물 위생, 가축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가축전염병 발생농장로부터 3km 이내 위치한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 위원, 경기도 소속 가축방역관 등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 위 협의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 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음.
- 조례를 통해 규정한 위 사항은 동물방역의 최종적 결정권을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의 개정이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었음.

III. 결어

- 현재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살처분이라는 극단적 조치만이 고려되고 있어, 동물방역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위생관리, 면역력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은 묘연함.
- 이에 가축 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등 가축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 질병 관리 수준의 등급을 부여하였음.
-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처분 유예의 권한을 주는 것을 명시하여 중앙부처의 일률적 살처분 명령에 부조리함을 해결하고 현재의 방역체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고 적극적으로 환영함.
- 아울러 지역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판단의 권한 등을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 이양하는 등 지자체의 자체적 동물방역 체계 마련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임.

[참고]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농가가 「동물보호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실현하고 방역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조화로운 축산농가를 육성하고 나아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장을 말한다.
2.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란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말한다.
3.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4. “방역지역”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시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에서 정하는 관리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및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와 방역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농장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농장으로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2.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지원
4.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5. 그 밖에 동물의 복지와 방역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 위치한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 위원, 경기도 소속 가축방역관 등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토론 2

박경일 사무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토론 3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박은경 대표 | 두레생협 경기지역협의회

1. 지금의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일상화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통제되는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러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처음 발생했을 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가축들을 생매장하는 하는 끔직한 광경을 매체를 통해서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고병원성 AI는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축산 농가들은 추운 겨울에도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고 가축전염병 발생과 살처분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2. 가축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두레생협은 유정란 생산지인 산안마을과 1984년부터 36년 동안이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여 사육환경을 몸소 체험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유정란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관계를 넘어 '왜 가축들도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겨울 산안마을의 살처분 대상 소식을 접하고 두레생협을 비롯한 생협 소비자들과 함께 반대시위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 살처분이라는 끔직한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축들이 못쓰는 물건 폐기처분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로서 인간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하듯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축들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가축예방에 대한 많은 법률, 정부 및 지자체 지침 등의 많은 제도에 생명 존중사상이 녹아들어가야만 죽음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가축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늦은 감은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조속히 통과되어 개정되어야 합니다.

3. 안전한 먹거리의 실종과 축산농업의 붕괴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두레생협을 비롯한 많은 생협조합원들은 농민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운동,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차별한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붕괴와 그로 인한 안전한 먹거리의 실종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과 불안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올해 살처분이라는 아픔을 딛고 다시 산안마을 유통관을 올 가을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4월 병아리가 입식이 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로 많은 소식을 듣고 더욱 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란계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물량 부족으로 인해 작년 미국산, 태국산 등 외국의 달걀을 무관세로 수입되었고, 올해도 가격상승등을 우려해 농식품부는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달걀은 어떻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 지도 모를 뿐더러 기나긴 유통기한문제, 가공에 들어간다는 달걀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 소식을 접할 때마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은 예방적 살처분이 반복되면 농민들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산안마을을 비롯한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이 더 이상 농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출처도 불분명한 외국산 축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4. 예방, 방역의 선조치를 바뀌어야 우리의 환경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최근 농식품부에서 질병관리등급제에서 가등급을 받으면 살처분 거리기준이 3Km에서 500M로, 감염거리가 500M를 넘지 않으면 비감염살처분을 거부할 수 있는 개선지침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많은 농가가 이 제도를 수용하는데 농가책임부담이 커서 참여가 저조하고 현재 사료값도 많이 올라 재입식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침 수정이 아닌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리적인 특성상 AI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진다면 지금과 같이 땅에 묻는 죽음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역모델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역과 예방 중심의 제도 정비,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백신 정책의 도입과 사육밀도와 사육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데이터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공기와 햇빛도 만들어오게 하고 점등과 환풍기로 대체하는 무창계사도 감염율이 높다는 것과 바이러스의 3대 증식조건이 밀집, 밀폐, 밀접으로 본다면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좋은 곳에서 자란 닭의 면역력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한 제도에 대한 많은 의견들과 우리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 살처분 반경 조정, 보상문제, 정부와 지자체의 단일한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진행, 그 동안의 고병원성 AI를 포함 가축전염병에 발생 시 대응에 대한 학술적 근거마련 등 많은 것들이 개선 또는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기초발제를 해주신 이근행 소장님, 서국화 변호사님을 비롯한 토론자들의 말씀에 가슴 깊이 동의하며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예방으로 AI를 비롯한 가축전염병을 막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자체의 일방적 집행이 아닌 현장의 전문가, 농민들, 소비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후속조치인 살처분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예방, 방역중심의 전환이 되어야 우리의 아이들에게 오염된 생태계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닭, 돼지, 소를 땅에 묻고 버려지는 장면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처리방식이 훗날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토론 4

정부의 고병원성AI 방역대책 개선사항

이흥재 회장 | 대한양계협회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AI가 발생하였고 살처분 된 가금은 약 3천만수가량 되었다. 또한 지난 11월 8일 메추리농장의 고병원성AI발생이후 천안 풍세 산란계농장까지 현재(12/12일 기준) 11건의 농장발생이 있었다. 현재 양계농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고 조기종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농가에 손해가 있다고 해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과거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밤낮없이 소독에 매달리고 외부출입을 중단하는 등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정책이 현실성 없거나 무조건적 살처분 정책만이 방역정책의 주안점이 되었다. 정부의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여론의 못매를 맞아 산란계농장의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 개정으로 살처분범위 500m(오리전축종은 1km)유지와 동일 축종에 한해 살처분실시 등 정부와 생산자단체간의 고병원성AI개선대책을 협의하고 마련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박흥근의원 발의안)

[주요내용]

- ①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고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등 가축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관리등급을 부여
- ② 가축방역심의회(지방)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
- ③ 비감염(다른 개체로 전염가능성이 없는 것) 살처분 유예요건 추가

고병원성AI 백신접종 정책

백신접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제거, 예방,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병원성AI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백신접종은 가금류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양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야생종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고 가금류의 피해를 축소시키며 인체감염의 위험도 낮출 수 있다.

바이러스 근절을 위해 백신접종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중국, 홍콩, 멕시코 등의 경우 백신접종이 바이러스 근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백신 사용국가들의 긍정적인 사례가 존재하고 있지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히 남아있고 백신접종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이 충분인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도 부정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백신 접종
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식량농업기구가 제시하는 올바른
백신사용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8회의 AI 발생이 있었고, '16~'17년도에는 가금류가 3천9백만수
가량 살처분되었고 이번 '20~'21년도에도 3천만수가량 살처분되면서 백신접종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었
다. 이는 살처분되는 가금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금업계에서는 살처분정책에 대한 비판과 살처분예방
을 위한 백신접종 요구가 있었다. 특히 알을 생산하는 산란계와 종계의 경우 다량의 마릿수가 살처분될
시 수급과 사육환경의 연속성 문제로 심각한 경영손실과 수급불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AI발생에도
무분별한 살처분 중단과 백신 접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AI백신 접종 정책은 확연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논의해야 하지만 살처분으
로 인한 조기근절 정책을 채택한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살처분 규모가 큰 국가는 찾기 어렵다. 선진
국은 국내처럼 농장이 밀집되어 사육하는 사례도 드물고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은 예산이나 여건상
과감한 살처분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살처분 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다.

살처분에 의한 조기근절 정책이 장기적으로 가금산업에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2019년말부터 현재까지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인체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심각하
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 백신정책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어 고병원성AI 또한 살처분정
책이 정부와 가금업계에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를 거울삼아 AI백신접종이 업계의 공론이고 철새에 의한 AI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예방적살처분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AI방역정책이다.

고병원성AI 발생능가의 과도한 감액

고병원성AI 발생능가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살처분보상금을 경감 또는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고병원성AI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AI발생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방역 및 소독시설의 취
약상태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물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는 것이다. 발생농장의 경우 기본 20%
감액, 교육 미이수 10%, 폐사 신고가 늦을 경우 최대 40%, 외국인근로자 미신고 최대 60%, 시설출입
차량 미신고 20%, 방역기준 위반 건별로 20%, 최근 5년 이내 재발생 최대 80% 등 가축 사육자의 가전
법 위반 시 과도한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

살처분보상금마저 삭감되어 재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빈번하
다. 또한 AI 발생농장에 대해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발생농장의 감액비율이 커 능가가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어 감액비율조정이 필요
하다. 또한 살처분보상금 감액도 억울한데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은 2중 처벌원칙에 위배된다. 따라
서 살처분감액 비율조정과 살처분 감액, 과태료(형사고발)처분 중 두가지 중에 하나만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살처분보상금 산정시 발생일기준 전월평균가격 적용

현행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pm 15\%$ 범위를 넘는 경우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을 평균시세로 되어 있다.

※ 근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한 예방적살처분농가의 경우 실제 보상금은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급되고 있다. 현행 살처분보상금지급기준에 따르면 보상금지급을 위해 농가가 직접 입증(영수증, 거래명세서 등)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에 큰 어려움이 있다.

통상 산란계는 고병원성AI 발생 후 계란가격이 상승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AI 발생때 최초발생일(11/27일)이후 계란가격은 115원 → 184원(21.2월)으로 62.5%나 상승하였다. 산란계의 경우 AI가 발생하여도 살처분(예방적살처분)시기에 따라 계란판매가격도 변동되는 것이다. 이번 AI발생의 경우 예를 들어 오늘까지 200원 받고 계란을 판매하던 농가가 살처분을 하게 되면 118원을 보상받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AI발생이 6-7개월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도 최초발생 전월평균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병원성AI 보상금 산정 시 해당농장의 계란가격은 발생한날 전월평균시세로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질병 발생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로 일괄 보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가 아닌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상수준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토론 5

농장동물 생명권 존중하는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으로 전환 필요

조현정 활동가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1. 동물을 ‘물건’ 아닌 생명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확산

- 지난 7월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물권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계류 중임.
- 생명체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물에 제3의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임.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내용으로 이미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민법을 개정하였음.
- 2018년 헌법에 ‘국가와 국민은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신설한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발표됨.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밝혀 국민과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등 지지를 얻은 바 있음.

2. 국내 농장동물 사육실태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 2021년 현재 국내 농가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1천 146만 5천 마리, 산란계는 7천 72만 2천 마리, 육계는 8천 369만 9천 마리, 오리는 753만 마리, 소는 400만 마리에 달함(통계청, 2021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인증제가 도입된 산란계 농가의 사육마릿수는 3.9%, 육계 7.6%, 돼지 0.5%, 젖소의 경우 0.3%에 불과함(농림축산검역본부, 2020년 누계기준).
- 여전히 90% 이상 대다수 농장동물이 공장식 축산 밀집사육 환경에서 사육되는 상황에서 생명체인 동물은 비위생적이고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 저하로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
- 2010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돼지와 소 약 350만 마리 살처분됨. 이후 구제역 백신 정책을 시행하며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며 효과를 보고 있음. 2010년의 피해는 무려 3조원에 달했고 당시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하고 자살하는 등 참여자 대부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리적 충격 겪음.
- 조류독감(AI)은 2003년 국내 첫 발생 후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음. 최악의 살처분 마릿수를 기록한 2016년~2017년 3천 800만 마리에 이어 2020년~2021년 3천만 마리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됨. 2020~2021년의 실제 조류독감 발생 건수는 100여 건에 불과하나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농장에 대한 무차별 예방적 살처분 시행으로 비감염된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며 과도한 살처분 논란 일으킴.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201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상황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포획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3. 살처분 의존 방역정책의 문제점

- 대규모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은 대량 살처분으로 이어지고 이는 발생농장 24시간 이내 살

처분 목표를 위해 비인도적 생매장 살처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즉각적 의식 소실 유도 후 절명이 이루어지도록 명시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동물이 의식 소실 없이 산채로 살처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심지어 지난 3월에는 작업자에 의해 닭이 산채로 파쇄기에 집어넣어지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함.

- 2017년 조류독감 발생 당시 익산시는 발병농장에서 2.4km 떨어진 참사랑 산란계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림. 참사랑 농장 내 닭들은 수차례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아 살처분 제외 가능성을 시에 검토 요청했으나 살처분이 무효해진 1년이 넘는 동안에도 시는 살처분 명령을 거두지 않음. 위험도 평가 없는 기계적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은 2020년 화성시 산안마을 산란계 농장에도 반복됨. 산안마을 닭들은 간이키트 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하고 조류독감 최대 잠복기를 지나 감염 위험에서 벗어났음에도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
-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시행에 대한 명령 및 유예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졌음에도, 참사랑 농장과 산안마을 사태를 살펴보면 익산시와 화성시 스스로 역할을 하기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답습하는 데 그침.
-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문제도 심각함. 2019년 ASF로 살처분된 돼지 사체에서 새어 나온 핏물이 임진강으로 유출된 사례가 있음. 매몰지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농작물과 오염된 식수를 통해 주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피해로 이어짐.

4. 개선 방향

- 대량 살처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밀집사육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 농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책 절실. 또한, 동물의 건강과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를 반영한 방역 조치 필요.
- 평상시 지자체는 방역 역량을 강화해 사전예방 중심으로 방역업무를 수행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일변도 정책 대신 준비된 백신 도입으로 동물이 대량 희생되는 살처분을 최소화해야 함.
- 대부분 지자체들이 용역업체에 살처분작업을 맡기고 있어 현장에서 동물이 고통사를 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인도적 살처분 시행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포함 작업자의 인체 감염에 대한 모니터링과 트라우마 관리도 필수적임.
-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공장식 축산 축소에 찬성하고 농장동물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응답 결과가 있음(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권 신장과 함께 농장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져가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적용받는 동물로서 개선된 보호·복지 정책 마련되어야 함.
-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토론 6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해

최창호 부대표 | 한살림 유통사업장 작목모임

지금 실행되고 있는 질병관리 등급제는 측사에

- 1.외부 울타리
- 2.내부 울타리
- 3.내부 울타리와 외부 울타리 사이에 방역실 설치
- 4.축사 동마다 전실설치(전실규정 별도)
- 5.입구 차량 소독시설
- 6.입구 방역시설
- 7.각동 전실 CCTV설치,기록 한 달보관
- 8.집란실 전실 설치

등을 요구한다. 질병관리등급제의 대상은 사육규모가 크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양계장을 모델로 하고 있다.

문제점

1.

여기에 부합 할 수 있는 양계장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양계장이다. 소규모 양계장은 좁은 면적으로 내부 울타리 전실등을 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특히 동물복지형 양계장은 쾌적한 환경으로 인한 면역증진, 계사 내 햇빛 소독 등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질병관리등급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양계 산업이 여러형태로 발달해온 것을 감안하여 케이지 양계, 평사식 양계로 질병관리등급을 세분화해야 참여기회가 높아지지 않을까 한다.

2.

질병관리등급을 받으면 살처분을 면할 수 있다지만 다른 규제는 그대로다. 인근에서 AI가 발생하면 반경 3km는 21일 동안 관리지역이 된다. 관리지역에는 사료차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농가차량이 3km 밖에서 사료차를 만나 사료를 받아 가지고 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사료는 농가에서 벌크통에 가루로 그대로 받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와야 하는지 난감하다. 살처분은 면할지 모르지만 매일 매일 먹어 살리는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발생한지 21일 이후 전 농가가 이상이 없으면 9일 후(총30일) 10km방역대가 해제되는데 이 10km가 중첩이 되어 있으면 20km가 되고 이 안에 한 농가라도 이상이 있으면 방역대가 해제 안되어 병아리 입식을 할 수가 없다. 또 방역대별 최종발생 날자가 다르기에 중

복이 되면 다른 방역대라 해도 최종 발생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해제(총60일이 될 수도)되기에 그만큼 더 입식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지난겨울 안성은 10km방역대가 3개 겹치면서 안성은 끝났으면서도 중첩된 방역대로 인해 해제가 더 늦어졌다.

3.

질병관리 등급을 받고서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드는 문제다. 평가액의 75~60%를 지급 받는다. 최고 40%정도 삭감되는 것이다. 농가는 방역시설,소독설비,울타리설치에 투자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 다 비용발생 요인인데 이렇게 해서도 발생되면 농가 책임으로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 비해 25~40%가 삭감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점소독소도 소독효과가 86%로 나온 실험(거점소독시설 얼마나 효과있을까. SBS 유튜브)이 있다. 축산관계 차량은 한곳에 다 모이게 하고서 14%는 놓치고 있듯이 농가도 소독의 한계가 있다. 매일 매일 지붕까지 소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수준을 심화시키고 방역여건향상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AI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기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AI를 본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본다. AI는 철새로부터 온다는 것이 밝혀져 있어서 양계농가를 보기보다 철새를 보아야한다.

예방에는 예측과 대비가 있는데 농가에서 하는 방역은 대비를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예측해서 대비하는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발생했던 지역에서 또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AI발생 지역은 통계로 어느정도 나와있다. 올해도 음성,나주,천안에서 발생했는데 전에도 발생했던 지역이다. 경상도나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방역도 거기에 맞게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농가에 방역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육계나 오리 휴지기를 둔다든지 자주 AI가 발생하는 축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 지원을 한다든지,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발생하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에 늦을 수 있어서 미리 대책을 세워놓으면 해마다 반복되는 발생지역의 살처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올해는 대형양계장들이 레이저를 쏘아 철새의 접근을 막고 있다. 그러면 그 철새들이 어디로 가는지 관찰해 보아야 한다. 올해의 AI발생 형태는 작년과 또 다를 수 있다. 농가는 철새를 쫓아낼 수 밖에 없지만 철새도 어디선가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기에 거점 철새보호지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예측해서 움직이려면 관찰과 조사 조류전문가,바이러스전문가의 조언 등 여러분야의 협업이 필요하다. 단순히 농가책임의 방역만론 자연에서 오는 사회적 재난인 고병원성 조류독감을 막는 데 한계가 많다.

하승수 변호사, 대표 | 공익법률센터 농본

우선 지난 12월 6일 박홍근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발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매년 반복되는 대량의 살처분은 관료주의, 행정편의주의가 빚어낸 참사입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매몰지(2020년 기준 전국에 조성된 가축매몰지는 6,188개)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살처분 보상금 등 살처분으로 인한 예산부담 증가, 살처분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트라우마 등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으므로, 이제는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1조 목적조항에서 “가축의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추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말 그대로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면, 당연히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사람에 대한 감염병에 관한 법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는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제4조에서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서면심의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¹. 지금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부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최소한의 내용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위원장 및 위원구성비율 정도는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규칙에서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관련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형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민간이 위원장을 맡거나 최소한 민간과 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제18조에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때 “위생관리”만이 아니라 “위생관리 등 사육환경” 실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의 측면에서나 가축의 건강 측면에서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육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5. 제20조 제1항에서 단서를 삭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람에 대한 감염병에서도 확진자에 대한 조치와 접촉했으나 미감염된 사람에 대한 조치, 그 외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다른 것처럼, 가축전염병에서도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과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구분없이 무차별적인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도 없는 반(反)생명적인 법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감염 살처분’과 ‘비감염 살처분’은 개념적으로나 법체계상으로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 제20조의2로 ‘비감염 살처분 명령’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제1항에서 비감염살처분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비감염살처분에 대한 조항 자체를 삭제할 수 없다면, 그 실행요건이라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20조의2 제3항에서 “1.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2.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판정이 나온 경우 3.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소한의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4항에서 살처분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것도 너무나 당연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7. 또한 살처분 유예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살처분 유예신청이 접수되면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신청을 심의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1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행정심판을 거쳐서 지난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가축방역심의위원회는 총92명이고, 공무원 16명, 민간 76명(학계 34, 축산단체 11, 민간전문가 31)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중앙가축방역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단 한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회의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였던 것이다. 또한 분과별 심의는 있었지만, 조류독감을 다루는 가금분과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 20차례의 심의를 모두 서면심의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서면심의를 통해 진행된 심의결과를 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상정한 안건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의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가금분과 서면심의를 결과를 보면, 모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한 안건이 그대로 통과됐다.

별첨자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705

발의연월일: 2021. 12. 6.

발 의 자: 박홍근·김승남·김원이·김정호·서영석·송옥주·용혜인·우원식·위성곤·이상헌·최인호·
한준호·황운하 의원(1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가축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보고 그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살처분 및 유예 여부 등의 판단기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처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비감염가축에 대한 살처분의 필요성이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음에도 처분권자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살처분 명령을 감행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앙과 지방의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이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심의회의 지위나 역할이 혼재된 상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포함하고,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등 가축환경 전반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및 제18조).

나.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함(제4조).

다. 비감염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살처분 명령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진과”를 “발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관할 구역 내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제1항 중 “위생관리”를 “위생관리 등 사육환경”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비감염 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에 한정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2.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3.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

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20조”를 “제20조 또는 제20조의2”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8조 중 “제20조제1항 본문”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20조,”를 “제20조, 제20조의2,”로 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제20조,”를 “제20조, 제2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0조”를 “제20조 또는 제20조의2”로 한다.

제53조 중 “제20조,”를 “제20조, 제20조의2,”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감염 살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u> ———— .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생략)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u>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u>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u> <u>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u> <u>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u> <u>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u> <u>5. 관할 구역 내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u>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제5항—————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u></p>	<p>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 ——— — <u>위생관리 등 사육환경</u>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살처분 명령) ① <u>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u></p>	<p>제20조(살처분 명령) ① ——— ——— ——— ———. <단서 삭제></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20조의2(비감염 살처분 명령) ① <u>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u></p>

현행	개정안
	<p>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에 한정한다)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2.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3.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역류·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들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축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p>	<p>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 ———— —제20조 또는 제20조의2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생략)</p>	<p>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20조제2항 또는 제20조의2 제2항 ————. ————.</p>
<p>③ ~ ⑥ (생략)</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p>	<p>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 ———제20조제1항 ————.</p>
<p>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제48조(보상금 등) ① ————.</p>
<p>1.2.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3. —————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 —————.
3의2. ~ 6. (생략)	3의2.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의2제1항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 .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2. ———— 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 제20조, 제20조의2,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① ————— <u>제20조, 제20조의2</u>, ————— .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지시(제20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해당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p>	<p>④ ————— <u>제20조 또는 제20조의2</u> ————— .</p>
<p>제53조(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u>제20조</u>,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53조(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 <u>제20조, 제20조의2</u>, ————— .</p>
<p>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56조(벌칙) ————— .</p>

현행	개정안
1. <u>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u>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또는 <u>제20조의2제1항에</u>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메모

